

인천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4가단212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효연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8.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26 지분에 관하여,

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들 사이에 2023.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D에게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E 주식회사는 2019. 1. 15. D에게 1,68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10.9%, 연체이자 연 13.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하였다.
- 2) D은 이 사건 대여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22.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3) 원고는 D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22가소539766호)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23. 9. 7. “피고는 원고에게 20,215,345원 및 그 중 14,592,874원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4) D의 아버지 F(이하 ‘망인’)이 2023. 11. 28.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자녀 피고들, D, G, H, D과 배우자 I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2씩 공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5)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망인 사후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26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들에게 이전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D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모두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26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D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구입자금을 부담하여 망인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

별지